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11호

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71호(2021. 4. 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제2023-101호(2023. 8. 3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제2026-42호(2026. 2. 26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5. 7.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9-10 외 3필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8,786.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하동석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07, 4층 (잠원동, 삼정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1. 4. 23.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8,786.0㎡

2) 건축규모 : 지하4층/지상20층, 아파트 2개동(251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(㎡)									비고
	계	59 미만	59	84	97	113	115	130	150 이상	
계	251	71	66	30	37	34	8	2	3	
토지등소유자	121	10	19	19	34	30	6	-	3	
일반분양	86	23	43	11	3	4	2	-	-	
보류시설	2	-	-	-	-	-	-	2	-	
임 대	42	38	4	-	-	-	-	-	-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기존건축물 철거완료

마. 주요 변경내용

- 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 증가, 임대주택 매각 수입 증가 등 총수입 변경
- 조합과 시공사간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기타 사업비 변경 등
-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

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